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김성원 · 서천호
박준태 · 이달희 · 이상휘
박형수 · 정동만 · 이성권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,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· 건축 · 법률 · 회계 · 세무 ·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 · 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,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

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.

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·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,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 신설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정비사업 전문조합장 후보자의 추천) ①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시장·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, 공개모집, 심사기준, 추천절차 및 방법,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1조의2(정비사업 전문조합장 후보자의 추천) ①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시장·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</u> <u>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</u> <u>④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</u>

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
른 후보자의 자격, 공개모집,
심사기준, 추천절차 및 방법,
후보자 등록 및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⑥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
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
정비사업의 시공자, 정비사업전
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
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후보자
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해관계
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.